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6
----------	-----

2023. 10. 12.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9. 27. 박다미 의원 등 9명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2.)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박다미 의원)

-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겸직금지 및 의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겸직신고 점검 강화(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등(안 제7조)
- 다. 회의출석 의무 규정(안 제8조)

라. 징계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마. 징계기준 마련(별표)

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신설(별지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겸직신고 부실, 신고내용 검증 미비, 금지규정 위반 제재 미흡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조례 개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근거를 명시하고

- 안 제2조(윤리강령)제5호의 규정은 오타(誤打)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1)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겸직신고)제3항의 개정규정은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기 위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신설되는 제5항은 2009. 4. 1. 「지방자치법」 개정시의 규정인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에 제43조제6항²⁾ ‘권고 규정’ 조문이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변경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법령과 다르게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금지)제1항의 규정은 2009. 4. 1.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35조제5항³⁾의 조문을 일부변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제7항⁴⁾에 명시적으로 그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공

2) 지방자치법(현행)

제43조(겸직 등 금지)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3)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4) 지방자치법(현행)

제43조(겸직 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체’ 및 ‘관리인’의 정의를 규정하여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제5항은 의장이 제1항에 따른 겸직한 의원에게 그 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으로 보이나 현재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규정한 조문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제1항의 신설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⁵⁾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신고제도를 창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⁶⁾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6)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할 것으로 보여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⁷⁾에 따라 지방의회에 해당 확인 자료를 요구하고 지방의회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신고제도를 창설한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별지 서식은 필요 없다고 하겠음. 참고로 2022. 5. 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⁸⁾에서도 지방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각각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규정⁹⁾을 두고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지방의원 해당)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있음<참고자료 첨부>.

- 안 제8조(회의출석의무)에서는 의원의 회의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범위 및 방식은 의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바 운영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이고 현재 회의록이 공개되어 출석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개가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안 제9조(징계 등)에서는 징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01조¹⁰⁾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회의규칙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입법형식이 법률이 정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안 별표 1에서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임. 다만, 적용기준은 예시에 불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아울러 별표 제목은 <예시>¹¹⁾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별지 제2호서식 조문 중 법령명은 낫표(「)를 표기하고 명칭은 통일성을 위해 <예시>¹²⁾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0) 지방자치법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11) <예시>

별표 1 징계 기준(제9조 관련) ⇒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의 겸직금지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 규정들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12) <예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띄어쓰기> 강남구의회의원 ⇒ 강남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236

제안연월일: 2023. 10. 12.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의원의 회의출석의무와 출석일수 공개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겸직신고 사임권고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징계 규정 등의 조문은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함.

2. 수정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점검 강화 조문 수정(안 제5조제3항)

나. 겸직신고 사임권고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조문 삭제(안 제5조제5항 및 안 제5조의2)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문 삭제(안 제7조)

라. 회의출석의무 규정의 출석일수 공개방식 명확화(안 제8조)

마. 징계 규정 삭제 (안 제9조 및 별표)

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식 삭제(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게시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
직신고”을 “게시자료, 겸직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
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본회의 및 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2
항 중 “의원의”를 “의장은 의원의”로,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별표 1을 삭제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강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강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삭 제>

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 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제7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 견
4. 의원이 강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강남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징계 기준(제9조 관련)	<삭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비위의 유형</th> <th style="width: 40%;">비위의 정도</th> <th style="width: 45%;">적용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품위유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td> </tr> <tr> <td>2. 청렴의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td> </tr> <tr> <td>3. 겸직금지 위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td> </tr> <tr> <td>4. 회피의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td> </tr> <tr> <td>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td> </tr> <tr> <td>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사과 </td> </tr> <tr> <td>6. 그 밖의 위반 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td> </tr> </tbody> </table>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주변”을 “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직신고”를 “게시자료,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으로, “등에”를 “등을 위해”로, “제출”을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u>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 4. (생략)</p> <p>5. <u>주변</u>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책임을 다한다.</p> <p>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1호서식</u>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의장은 <u>겸직신고</u>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u>제출</u>을 요</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4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u> -----</p> <p>-----.</p> <p>제2조(윤리강령)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민</u>-----</p> <p>-----.</p> <p>제5조(겸직신고) ① -----</p> <p>-----</p> <p>--- <u>별지 서식</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u></p>

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
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
등을 위해 --- 자료 제출-----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
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
한 의회 출석일수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박다미·손민기·이동호·

우종혁·이성수·강을석·

김형곤·김진경·오은누리 의원

(이상9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겸직금지 및 의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점검 강화(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등(안 제7조)

다. 회의출석 의무 규정(안 제8조)

라. 징계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마. 징계기준 마련(별표)

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신설(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주변”을 “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검직신고”를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계
시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으로, “등에”를 “등을 위해”로, “제출”을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

제5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강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

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강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강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강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강남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현행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 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u>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 4. (생략)</p> <p>5. <u>주변의</u>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책임을 다한다.</p> <p>제5조(검직신고) ①·② (생략)</p> <p>③ 의장은 <u>검직신고</u>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u>제출</u>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4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u> -----.</p> <p>제2조(윤리강령)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주민</u>-----.</p> <p>제5조(검직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u></p>

④ (생략)

<신설>

<신설>

한 --- 등을 위해 --- 자료 제출---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강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강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강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

<신 설>

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
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
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
별시 강남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
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르며, 신
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
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
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
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
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신 설>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강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강남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